

2025년 구미시 금고 신규 지정사항 보고



2025년 구미시 금고 신규 지정사항 보고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5. 11. .
제출자 : 구미시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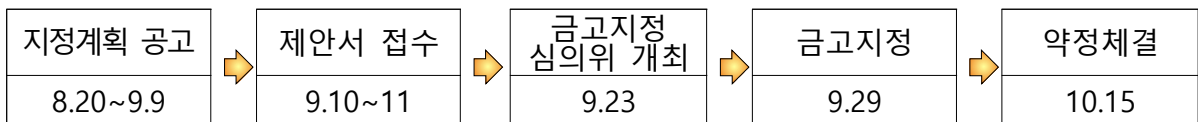
1. 관련근거

「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1항 “업무관련 담당 부서장은 금고 신규 지정시 구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”는 규정에 따라 보고함.

2. 주요내용

가. 금고지정 개요

- 지정방법 : 공개경쟁, 복수금고
- 지정회계
 - 제1금고 : 일반회계,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재정안정화계정)
 - 제2금고 : 특별회계, 기타 기금
- 약정기간 : 2026. 1. 1. ~ 2028. 12. 31.(3년)
- 추진경과



- 신청기관 : 2개사((주)아이엠뱅크 구미영업부, 농협은행(주) 구미시지부)
- 지정결과

지정금고	취급회계	금융기관	비고
제1금고	일반회계, 통합재정안정화기금 (재정안정화계정)	(주)아이엠뱅크 구미영업부	
제2금고	특별회계, 기타 기금	농협은행(주) 구미시지부	

나. 협력사업비 출연계획

(단위:억원)

구 분	협력사업비 총액 (3년간)	연도별 출연금			이전계약 (‘22~’25)	증가액 (증가율)
		2026	2027	2028		
합 계	42.1	14.36	14.37	13.37	39.6	2.5 (6.3%)
제1금고 (아이엠뱅크)	35	12	12	11	33	2 (6.1%)
제2금고 (농협은행)	7.1	2.36	2.37	2.37	6.6	0.5 (7.6%)

다. 금고지정 심사 및 평가

- 평가주체 : 구미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
- 위원구성 : 10명
 - 위원장(부시장), 시 소속 4급 공무원(2)
 - 시의원(1), 변호사(1), 세무사(1), 회계사(1), 대학교수(3)
- 평가항목 및 배점(100점 만점)
 -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(27점)
 -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(20점)
 -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(21점)
 - 금고업무 관리능력 (25점)
 - 지역사회기여 및 구미시와의 협력사업 (7점)
- 평가방법 : 심의위원별 점수 합산(총점)으로 순위 및 금고 결정
- 평가결과

구 분	금융기관명	총 점	비 고
1순위	(주)아이엠뱅크 구미영업부	980.10	만점 1,000점
2순위	농협은행(주) 구미시지부	952.50	

-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(심의위원회 의결사항)
 - 공개대상 : 제1금고·제2금고 지정결과, 순위별 총점
 - 비공개대상 : 심의위원 명단, 회의록, 금고지정 제안서 및 관련 증빙자료, 세부평가항목별 득점사항, 위원별 심사표

3. 금고지정 평가 세부내용 : 비공개(금고은행 경영 및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)

관계법령

□ 「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2조(금고의 자격요건) 금고취급금융기관(이하 “금고”라 한다)의 지정에 참여코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1. 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제1항에 따른 은행 및 금융기관(이하 “금융기관”이라 한다)

2. 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

제4조(금고 지정 평가기준) 경쟁 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의 금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.

제8조(심의위원회 기능)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·의결한다.

1. 금고지정 방식을 수의 방법으로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

2.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·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

3.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
제12조(의회 보고) ① 업무관련 담당 부서장은 금고 신규 지정시 구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세부항목별 평가 결과, 협력 사업비 출연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
구미시 금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(제4조관련)

평가분야	평가항목	배점	비고
	계	100	
	소 계	27	
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	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	(8)	
	- 국외평가기관	4	
	- 국내평가기관	4	
	※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(8점)을 평가	4	
	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	(19)	
	- 총자본비율(안정성)	6	
	※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(안정성, 6점)로 평가	6	
- 고정이하여신비율(건전성)	6		
- 자기자본이익율(수익성)	5		
- 대손충당금적립율	2		
※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(신협 농·수·산림조합, 새마을금고 등)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(금감원, 새마을금고중앙회 등)의 기준을 따름			
※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			
	소 계	20	
2. 구미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	가. 정기예금 예치금리	7	
	나. 공금예금 적용금리	6	
	다. 구미시 대출금리	4	
	라.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	3	
	소 계	21	
3.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	가. 관내지점의 수, 관내 무인점포 수, 관내 ATM기 설치대수	8	
	※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	8	
	나.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	6	
다.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	7		
	소 계	25	
4. 금고 업무 관리 능력	가.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	6	
	나.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	8	
	다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	8	
	※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	8	
라.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	3		
	소 계	7	
5. 지역사회 기여 및 구미시와의 협력사업	가.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	5	
	나. 구미시와의 협력사업 계획	2	
※ "지역사회에 대한 기여"는 '실적'으로, "시와의 협력사업"은 '계획'으로만 평가	2		

□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

1.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,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·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.

2.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%이상으로 하여야 하고,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%에서 최소 4%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. 다만, 항목 2(구미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), 항목 5(지역사회 기여 및 구미시와의 협력사업)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/2을 적용한다.

소 관 부 서		징 수 과
입 안 자	과 장	한 승 우
	팀 장	김 민 정
	담 당 자	장 정 한 (480-6892)